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970
----------	------

제안년월일 : 2021년 11월 26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소양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589호)과 신정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73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이에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수도요금 이사정산의 경우 ‘아리수 앱’이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수도계량기 지침을 입력하여 정산요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산된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에 별도의 분리고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가스나 전기요금 등 다른 공과금의 경우는 별도 ‘앱’을 통해 정산요금을 확인한 후 바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따라서 이사정산 수도요금 납부의 경우도 분리고지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민원 분야 업무부담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 급수업종 중 ‘공공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용’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한 급수업종인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1항제9호)
- 나. 수도요금을 전자적시스템으로 고지·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 다. 사설소화용 급수로 사용한 수돗물의 사용요금 납부기준을 ‘일반용’으로 적용함(안 제19조제3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분리고지한 수도요금은 전자적시스템(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고지·수납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 ② (생략)</p> <p>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수도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요금 중 <u>공공용</u> 최초단계의 요금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9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일반용</u> ----- -----.</p>
<p>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 ② (생략)</p> <p><u><신 설></u></p>	<p>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에 따라 분리고지한 수도요금은 전자적시스템(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고지·수납할 수 있다.</u></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u><신 설></u></p> <p>9. (생략)</p> <p>② (생략)</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